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67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김종민ㆍ이수진ㆍ천하람

이재관 · 강준현 · 정일영

임미애 · 김영배 · 복기왕

이용선 • 서영교 • 최형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13개 행위유형을 정의하고, 모든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및 신용회복조치 등 민사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한편, 행정조사, 시정권고, 형사벌 적용에 있어서는 부정경쟁행위유형 중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 등 두 가지 유형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행위 유형은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비교하여 볼 때 행위 태양, 침해의 방법, 위법성의 정도 및 보호의 필요성이 실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를 행정조사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 가 존재하지 않음.

대법원에서도 현행법의 기타성과도용행위 규정에 대하여 새로운 유

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변화하는 거래관념을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시한바 있어,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에 대한 행정조사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법률 제 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를 "제2조제1호"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등) ①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	제2조제1호		
<u>은 제외한다)</u> 의 부정경쟁행위			
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			
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			
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			
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			
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u>.</u>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